

환급 스타트업체를
위한

환급신청 길리잡이



 대구본부세관
Daegu Regional Customs



 대구본부세관
Daegu Regional Cus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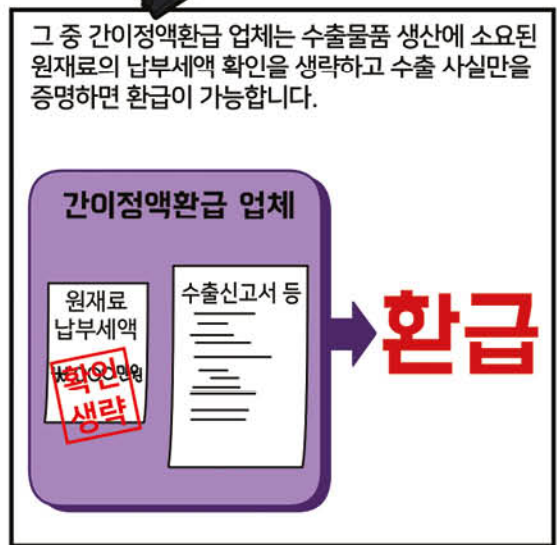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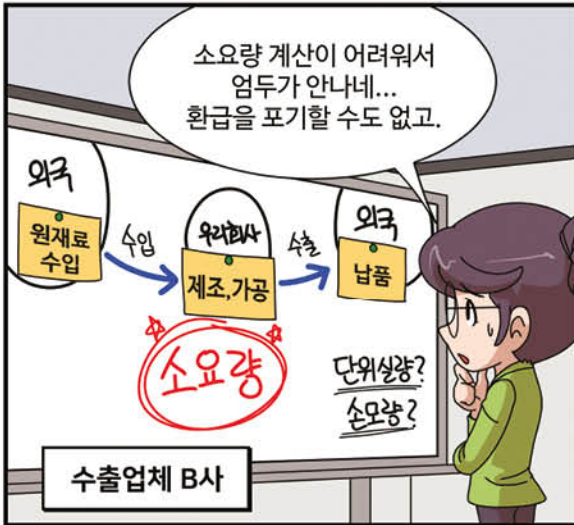
“

본 매뉴얼은 환급을 시작하는 업체의 환급신청 편의를 위해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수출물품 생산자**
(제조자 지위에 해당하는 임가공 위탁자 포함)
3. **연간 환급실적 8억원 이하**
4.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수출물품의 품목번호 (HSK)가 있을 것**

※ 개별환급이 유리할 때는 개별환급가능!



Contents

I. START FOR 관세환급 05

- 1. 관세환급이란? 06
- 2. 관세환급 종류 07
- 3. 관세환급 요건 08
- 4. 환급신청 사전 준비사항 10

II. ABOUT 간이정액환급 13

- 1. 간이정액환급이란? 14
- 2. 간이정액환급신청과 관련된 유용한 제도 15
- 3. UNI-PASS를 통한 환급신청 17

III. ABOUT 개별환급 21

- 1. 개별환급이란? 22
- 2. 개별환급신청과 관련된 유용한 제도 24
- 3. UNI-PASS를 통한 환급신청 25

IV. 최근 달라진 환급제도 31

- 1. 환급신청 기간 연장 32
- 2. 환급정정 신설 32
- 3. 간이정액환급 기준 실적 확대 33
- 4. 수출포장용품 환급대상 확대 33

V. Q & A 34

VI. 서식모음 38

I

START FOR 관세환급

1. 관세환급이란?
2. 관세환급 종류
3. 관세환급 요건
4. 환급신청 사전 준비사항





2. 관세환급 종류

환급방법은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 개별환급과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방법이며,
-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 VS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대상품목	제출서류	적용대상	대상품목	제출서류
모든 수출 기업	모든 수출 물품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중소기업으로, 연간 환급액 8억원 이하인 업체	간이정액 환급률표 고시된 수출품목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을 산출하여 환급			간이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 적용(2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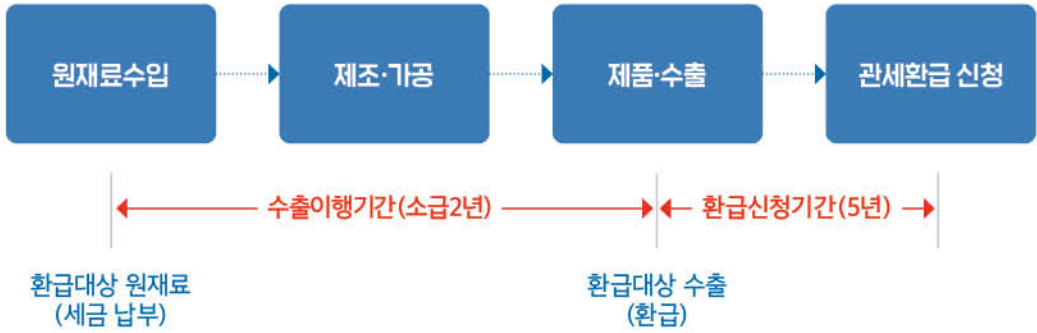
환급방법 장단점은?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액 계산이 간단하여 쉽게 환급받을 수 있고, 개별환급은 간이정액환급 보다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START FOR 관세환급



3. 관세환급 요건



- +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 +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야 하고
- +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



CHECK POINT!

-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건에 대해 환급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자까지 체크)
- ✓ 선(기)적 확인 후 환급신청!! 환급은 수출물품이 선적된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수출건에 대한 선적 사실은 선사, 항공사 또는 포워더를 통하여 수출화물 시스템에 등록되면 익일 환급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되므로 선사 등에서 선적자료를 입력한 날의 다음날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대상 수출이란?

- 모든 수출에 대해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환급대상 수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출	환급대상 무상수출	주한미군 판매·공사	보세구역 선(기)용품
·관세법에 의한 유상 수출	·수탁, 위탁가공 수출 물품 ·대체물품의 수출 ·견본수출 등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 판매 ·주한미군, 외국기관 시행 공사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공급 물품 등 ·국제무역선(기) 공급 물품 ·원양어선 공급 물품 등

+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및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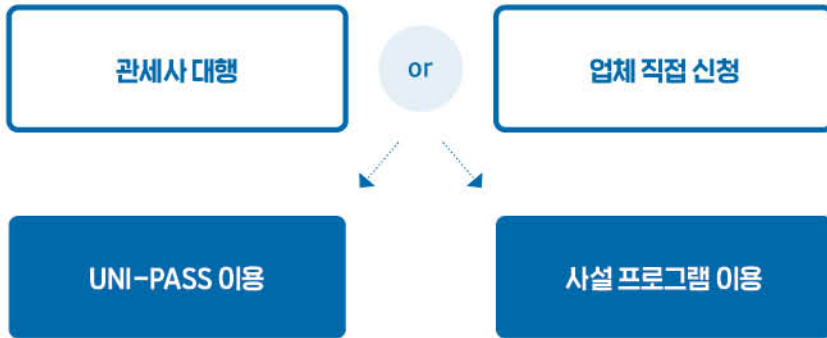
CHECK POINT!

- ✓ 환급신청서(갑,을지)에 기재된 해당 수출내역이 환급대상 수출이 아닐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4. 환급신청 사전 준비사항

◆ 환급신청 방법 선택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한 환급신청

- 별도의 S/W 없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환급 정보, 환급실적 조회, 수출입통관 정보 등 다양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회원가입

◎ 웹사이트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 확인 ▶ 업체정보 등록 ▶ 사용자 정보 ▶ 공동인증서 등록

tip) 공동인증서는 아래 5개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만 이용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4,400원)도 사용가능(단, 전자세금계산서용은 불가!!)

1.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사용자범용인증서, 전자무역용인증서
2.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법인/전자거래용, 법인/전자무역용
3.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범용/사업자용, 용도제한용/관세청통관포털
4. 금융결제원 (www.yeskey.or.kr) : 법인/범용, 법인(은행/신용카드/보험용)
5. 코스콤 (www.signkorea.com) : 전자거래범용

● 사설 통관프로그램 이용

- (주)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m), 또는 케이씨넷(www.kcnet.co.kr)에 가입하여 전산장비 구비와 환급신청용 S/W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용 S/W 개발업체			
지역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READYKOREA (주)매트릭스투비	(02)3466-5000 (02)2028-0700	www.readykorea.co.kr www.matrix2b.com
부산	(주)엔컴 (주)이씨스	(051)932-0001 (051)966-7000	e-ncom.co.kr newecis.clubj.co.kr
인천	(주)휴먼정보기술	(032)744-8112	

◆ 환급기관 변경신청

- 환급 등의 신청은 관할지세관에게 하여야 합니다.(원칙)
- 최초 환급신청업체의 경우 환급신청기관 신규·변경신청서(환급고시 별지 제2호서식, 41p 참조)를 제출하여 관할지세관(환급지세관)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환급 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 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기관 신규·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 등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계좌 신규 등록

-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서(환급고시 별지 제6호서식, 43p 참조)
-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환급금 계좌 통장사본(적금·신탁 통장 제외, 해지계좌 여부 확인必)
* 환급금 계좌 통보서와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I. START FOR 관세환급

◆ 표로 보는 환급 절차

구분	단계	세부 내용	
사전 준비	간이정액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신청기관 신규·변경신청 · 환급금 수취 계좌 등록 - 환급금 계좌통보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개별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신청기관 신규·변경신청 · 환급금 수취 계좌 등록 - 환급금 계좌통보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서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서 	
	※ 유니패스 회원 가입	웹사이트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환급 신청서 작성하기	1. 신청서 작성	공통사항(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신청과 수출물품의 총 환급액 등 개요사항 - 환급구분, 소요량구분, 수출물품(개요), 환급세액 기입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소요량구분은 작성하지 않음 	간이 · 개별
		수출물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을 기재 - 수출금액 :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별 단가를 기준으로 환급신청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수출금액을 기재 	간이 · 개별
		수입원재료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수입(매입) 근거와 환급금 내역을 기재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 사용량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물량을 기재하되, 사용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하며 절사 가능 - 원재료단가 : 규격별 수입과세가격(CIF)의 단가 기재 - 공제구분 :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 구분 부호를 기재 	개별
		부산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내역을 기재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개별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물 발생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 내역을 기재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 부산물이 수출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개별	
	2. 신청서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 후 오류로 통보되면 해당 항목을 정정한 후 재전송하거나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1544-1285) 	
	3. 환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신청서는 P/L, 서류제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 - P/L : 전송된 내용만을 화면으로 보고 심사 후 수리 - 서류 :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제출(서류제출가능) → 화면 및 제출서류 심사 후 수리 	

II

ABOUT 간이정액환급

1. 간이정액환급이란?
2. 간이정액환급신청과 관련된 유용한 제도
3. UNI-PASS를 통한 환급신청



II. ABOUT 간이정액환급



1. 간이정액환급이란?

◆ 의의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을 확인하지 않으며 납부세액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의 첨부를 생략하고, 수출사실 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은?

- +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야 하고,
- + 수출하는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며,
- + 수출물품 생산자(제조사 지위에 해당하는 임가공 위탁자 포함)로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8억원 이하인 업체로,
-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 적용대상물품

-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물품

◆ 준비서류

-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2. 간이정액환급신청과 관련된 유용한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번호(HSK)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

|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 품목번호(HS10단위)가 중요

- 간이정액환급은 품목번호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되므로 품목번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 분류되어 환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환급금과 가산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능이 복잡한 제품이거나 품목번호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자동간이 환급제도로 더욱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간이 환급제도』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되고, 수출신고할 때 품목별로 자동간이 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관세청 환급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청을 하고 지급 결정을 하여 월·분기별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도

| 대상업체 |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17호)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요건 검토 후 지정승인

| 요건검토사항 |

- ①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한 제조업체 여부
- ②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

II. ABOUT 간이정액환급



잠깐!!! 간이환급 시 유의하세요



본지사 중 한 곳이라도 개별환급 업체면 모두 개별환급으로 해야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업체라도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가 수출신고수리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급신청일이 아닙니다.



수출신고서 상의 수출거래 구분 및 환급신청서의 수출 형태를 확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상태수출, 수탁가공수출은 개별환급 신청대상입니다.



3. UNI-PASS를 통한 환급신청

-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공통사항(갑) 및 수출물품(을)만 작성
- 동일 연도, 동일한 품목번호(HS부호)를 환급수출형태(36p 참조)별로 월별 구분 없이 작성

[공통사항 작성]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환급대상물품	수입원재료	부산물	부산물중 수입원재료	배제사유서	제한배제사유서
신청내역						
*제출번호	-선택- > 20 > 재번				*접수일자	2020-08-25
관세사부호					*세관	
*환급구분					소요항구분	
추가환급접수번호					중당여부	<input type="radio"/> Y <input checked="" type="radio"/> N
신청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지급계좌						
*은행코드					*은행연구좌번호	
제조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출물품(개요)						
*대표품명규격						
*수출형태					*HS부호	
*총수출물량	0				*단위	
*총 수출금액(FOB)	0 원				육적국	[CN : 중국, EU : EU, US : 미국, ZZ : 기타]
환급세액사항						
*관세	0 원	*개소세	0 원	*교통세	0 원	
*주세	0 원	*교육세	0 원	*농특세	0 원	
*합계	0 원					
간편환급신청 파일업로드						
첨부파일	장아보기...					
						양식다운로드 업로드

목록

미리보기

임시저장

일괄저장

삭제

전송

II. ABOUT 간이정액환급

▶ 항목 및 버튼설명

항목구분		항목 설명	비고
신청 내역	제출번호	환급신청서 전송 시 전산심사 결과 오류 통지 및 환급 결정 통지 등을 확인 시 필요한 번호	채번 클릭
	접수번호	환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구분값으로 구분된 접수번호가 생성되어 통보됨	환급 - H 기납증 - G 분증 - D
	신청자부호	관세사 또는 신고자 부호를 기재	
	환급구분	<1>연산품, <2>간이, <3>개별, <4>자동간이, <5>원상태 중 <2> 또는 <4> 선택	
	소요량구분	생략	
신청자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별표 1의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	
	지급계좌	신청한 환급 계좌번호를 기재	
	제조사	수출물품 제조자 사항을 기재	간이정액환급 시 필수 기재
수출 물품	대표 품명규격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대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환급 수출형태	환급신청물품의 수출형태부호 기재	p.34~35 참고
	HS부호	수출신고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총 수출물량/ 단위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 건의 총 수출물량 및 단위를 기재	단위가 다양한 경우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가능
	수출금액 (FOB)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 건의 수출금액 총 합계액(FOB)을 기재	
	목적국	기재생략	
환급세액 사항	자동으로 기입됨		

II. ABOUT 간이정액환급



UNI-PASS 이용 팁!

환급신청할 대상(수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조회](#) ▶ [자사실적](#) ▶ [환급](#) ▶ [미환급정보 클릭](#)

미환급정보 ★ Home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환급 > 미환급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전체 0 건 페이지당 10

No	통관고유번호	본사통관고유번호	상호	관할세관	수출신고건수	총수출신고금액(원)	총예상환금액(원)
조회조건을 선택하십시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간이정액환급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간이정액환급률 조회 클릭](#)

간이정액환급율 ★ Home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간이정액환급률

세번부호

전체 111,512 건 페이지당 10

No	세번부호	적용일자	중지일자	규격	만원당환급액(원)
1	0202.20-1000	2020-01-01		갈비	10
2	0202.30-0000	2020-01-01		뼈 없는 것	140
3	0303.23-0000	2020-01-0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4	0303.24-0000	2020-01-01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종 · 외]	10
5	0303.25-0000	2020-01-01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 고돈 이]	30
6	0303.29-0000	2020-01-01		기타	10
7	0303.42-0000	2020-01-01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60
8	0303.44-0000	2020-01-01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10
9	0303.54-0000	2020-01-01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	10
10	0303.56-0000	2020-01-01		날새기[라키센트론 캐나다움(Rachycentron canadum)]	10

Ⅲ

ABOUT 개별환급

1. 개별환급이란?
2. 개별환급신청과 관련된 유용한 제도
3. UNI-PASS를 통한 환급신청



Ⅲ. ABOUT 개별환급



1. 개별환급이란?

◆ 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수량을 계산한 후 해당 수량의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개별환급의 요건은?

-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환급 대상 원재료의 요건에 맞고,
- + 원재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소요량계산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수출 물품별로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를 한 후
- + 수출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수입된 원재료 중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환급액을 계산하여,
-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 준비서류

사전 준비서류	환급신청시(서류심사시 제출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적용 비적용 신청서 ▪ 소요량산정방법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량계산서 ▪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 자재명세서(BOM)



간이정액환급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신청해야하는 경우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업체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되지 않은 수출물품
- 수입물품 그대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 소요량 산정방법이란?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하며, 소요량 산정방법 6가지가 중 업체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계산합니다

01

| 단위실량 |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으로, 손모량(loss)은 고려치 않음
- 손모량 발생이 거의 없는 기계류, 전자제품 등에 적합

02

| 단위설계소요량 |

- 수출물품 생산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으로, '단위실량 + 손모량(loss)'
- 손모량이 안정적인 화학제품, 의류 등에 적합

03

| 수출건별등총소요량 |

- 수출계약서 등에 기재된 수출물품 수량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된 수출용 원재료의 종류별 총 사용량

04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 일정기간 생산된 제품 1단위에 사용된 원재료의 평균 소요량

05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사용된 원재료의 평균 소요량

06

| 위탁건별 총소요량 |

- 수출물품을 국내 위탁생산하는 경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Ⅲ. ABOUT 개별환급



2. 개별환급신청과 관련된 유용한 제도



소요량 사전심사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업체 | 개별환급 업체

신청방법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소요량고시 별지 제5호서식)와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환급신청과 관련한 아래 내역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
- 소요량계산의 적정 여부
- 부산물 공제비율의 적정 여부



3. UNI-PASS를 통한 환급신청

[공통사항 작성]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환급대상물품	수입원재료	부산물	부산물중 수입원재료	배제사유서	제한배제사유서
------	--------	-------	-----	------------	-------	---------

신청내역

*재출번호	--선택--	- 20 -	재번	*접수일자	2020-08-25
관세사부호				*세관	Q
*환급구분	Q			소요량구분	Q
추가원급접수번호				증당여부	<input type="radio"/> Y <input checked="" type="radio"/> N

신청자

*통관고유번호	Q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지급계좌

*은행코드	Q	*온라인구좌번호	
-------	---	----------	--

제조자

*통관고유번호	Q	*사업자등록번호	
---------	---	----------	--

수출물품(개요)

*대표품명규격			
*수출형태	Q	*HS부호	Q
*총수출물량	0	*단위	
*총수출금액(FOB)	0 원	목적국	[CN : 중국, EU : EU, US : 미국, ZZ : 기타]

환급세액사항

*관세	0 원	*개소세	0 원	*교통세	0 원
*주세	0 원	*교육세	0 원	*농특세	0 원
*합계	0 원				

간편환급신청 파일업로드

정부파일

목록

미리보기

임시저장

일괄저장

삭제

전송

Ⅲ. ABOUT 개별환급

▶ 항목 및 버튼설명

항목구분		항목 설명	비고
신청 내역	제출번호	환급신청서 전송 시 전산심사 결과 오류 통지 및 환급 결정 통지 등을 확인 시 필요한 번호	재번 클릭
	접수번호	환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구분값으로 구분된 접수번호가 생성되어 통보됨	환급 - H 기납증 - G 분증 - D
	신청자부호	관세사 또는 신고자 부호를 기재	
	환급구분	<1>연산품, <2>간이, <3>개별, <4>자동간이, <5>원상태 중 <1>, <3> or <5>를 선택	
	소요량구분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연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중 선택(단, <5>원상태는 생략)	
신청자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별표 1의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	
	지급계좌	신청한 환급 계좌번호를 기재	
	제조사	수출물품 제조자 사항을 기재	
수출 물품	대표 품명규격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대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환급 수출형태	환급신청물품의 수출형태부호 기재	p.34~35 참고
	HS부호	수출신고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총 수출물 량/ 단위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 건의 총 수출물량 및 단위를 기재	단위가 다양한 경우 공통된 단위를 기준 으로 작성가능
	수출금액 (FOB)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 건의 수출금액 총 합계액(FOB)을 기재	
	목적국	수출물품 품목번호 4단위가 8519, 8521, 8525, 8526, 8527, 8528, 8703인 경우 목적국 코드를 기재	
환급세액 사항	자동으로 기입됨		

[환급대상물품 탭]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 **환급대상물품** > 수입원재료 > 부산물 >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 배제사유서 > 제한배제사유서

*신고번호-란-규격	<input type="text"/> -- 선택 -- <input type="text"/>	*수리일자	<input type="text"/>
물품식별번호	<input type="text"/>	*수출금액(FOB, 원)	<input type="text" value="0"/>
*수출물량	<input type="text" value="0"/>	*단위	<input type="text"/>

전체 0 건 수출정보조회 + 행추가 - 행삭제 초기화

□	연번	물품식별번호	신청서종류	신고번호-란-규격	수리일자	수출물량	단위	수출금액(FOB, 원)
---	----	--------	-------	-----------	------	------	----	--------------

목록
미리보기
임시저장
일괄저장
삭제
전송

▶ 항목 및 버튼설명

항목구분	항목 설명	비고
신고번호	해당 수출신고번호 기재	
수리일자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리일자를 기재	
물품식별번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로 동일물품 시 동일한 식별번호 사용	ex) पार्ट넘버,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수출신고필증의 '제품번호' 와 동일한 의미
수출물량	수출신고별로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수량/중량을 기재	소수점으로 기재가능 (절사가능)
단위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단위를 기재	
수출금액 (FOB, 원)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별 단가를 기준으로 환급신청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기재	

☞ 수출정보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선택하여 환급대상물품 입력이 가능

Ⅲ. ABOUT 개별환급

[수입원재료 탭]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환급대상물품
수입원재료
부산물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배제사유서
제한배제사유서

*물품식별번호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원재료식별번호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원재료구분 -- 선택 -- <input type="button" value="v"/>	*HS부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신고번호-란-규격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수입(매입)일자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사용물량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단위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관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개소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교통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주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교육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농특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세액 합계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원자재단가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원
공제(제한) 구분 - 선택 - <input type="button" value="v"/>	공제(제한) 비율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0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전체 0 건 계산근거내역조회 + 행추가 - 행사제 초기화

<input type="checkbox"/>	연번	물품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	신고번호-란-규격	수입(매입)일자	사용물량(단위)	세액합계
--------------------------	----	--------	---------	-------	-----------	----------	----------	------

▶ 항목 및 버튼설명

항목구분	항목 설명	비고
물품식별번호	수출물품(을)에 기재된 물품식별번호 기재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기재	업체 자율 부여 수입신고필증의 '부품번호'와 동일한 의미
원재료구분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00 - 수입신고필증 02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 평균세액증명서 04 - 분할증명서 05 - 부산물
수입(매입)일자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일자를 기재	기납증: 양도(매입)일자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월의 초일 분증: 분증의 양도(매입)일자
사용물량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공급하는 물량	
단위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공급하는 물량으로 신고번호의 단위를 기준으로 물량을 기재	

☞ 계산근거조회 화면에서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여 수입원재료입력이 가능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 환급대상물품 > 수입원재료 > **부산물** >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 배제사유서 > 제한배제사유서

*부산물식별번호	<input type="text"/>	*HS부호	<input type="text"/>
*물량	<input type="text" value="0"/>	*단위	<input type="text"/>
*관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개소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교통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주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교육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농특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세액합계	<input type="text" value="0 원"/>	*동명 및 규격	<input type="text"/>
*가격	<input type="text" value="0 원"/>		

전제 0 건 + 행추가 - 행사제 초기화

<input type="checkbo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HS부호	동명 및 규격	물량(단위)	가격(원)	세액합계
-----------------------------	---------	------	---------	--------	-------	------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 환급대상물품 > 수입원재료 > **부산물** >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 배제사유서 > 제한배제사유서

*부산물식별번호	<input type="text"/>	*원재료식별번호	<input type="text"/>
*원재료구분	-- 선택 --	*HS부호	<input type="text"/>
*신고번호-란-규격	<input type="text"/>	*수입(매입)일자	<input type="text"/>
*관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개소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교통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주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교육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농특세	<input type="text" value="0 원"/>
*세액 합계	<input type="text" value="0 원"/>		

전제 0 건 + 행추가 - 행사제 초기화

<input type="checkbo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	신고번호-란-규격	수입(매입)일자	세액합계
-----------------------------	---------	---------	-------	-----------	----------	------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 환급대상물품 > 수입원재료 > **부산물** >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 **배제사유서** > 제한배제사유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제사유

- 1. (제5조제1호) 동질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2. (제5조제2호) 제조장 가동중단 또는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된 경우
- 3. (제5조제3호)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 4. (제5조제4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5. (제5조제5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6. (제5조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사유

증빙자료명

전제 0 건 + 행추가 - 행사제

<input type="checkbox"/> 행번호	*신고번호-란-규격	*수리일자	*동명 및 규격	*사용량
------------------------------	------------	-------	----------	------

환급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 >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 환급대상물품 > 수입원재료 > **부산물** >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 배제사유서 > **제한배제사유서**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제한 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사용물량조정 (제9조제1항) 해당세율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환급사용물량제한배제사유

- 1. (제9조제2항제1호) 세율별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지 않아 생선에 구분 사용하는 경우
- 2. (제9조제2항제2호) 단일세율로 수입하는 경우
- 3. (제9조제2항제3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4. (제9조제2항제4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5. (제9조제2항제5호)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 6. (제9조제2항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실제생선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로 환급등 신청하는 경우

증빙자료명

Ⅲ. ABOUT 개별환급



잠깐!!! 개별환급 시 유의하세요



물량단위 확인하세요!!

수입신고서의 환급물량단위와 환급신청서(병지)의 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환급신청서(병지)의 세액은 해당 수입신고서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수입신고서의 납부세액 및 환급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용가능 세액 내에서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서(을지)의 수출신고수리일자가 환급신청서(병지)의 수입신고수리일자보다 빠를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경우는 선수출후수입이 인정됩니다. (조정고시 대상 품목은 선수입후수출 불인정!!)



소요량 산정방법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내용이 환급신청내역과 상이할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등록내역을 수정하거나 환급신청서의 을지 및 병지의 수리일자가 산정기간 및 적용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후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수출 형태별,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로 나누어 하며 수출신고란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서상의 같은 란의 물품을 나누어 환급 신청한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IV

최근 달라진 환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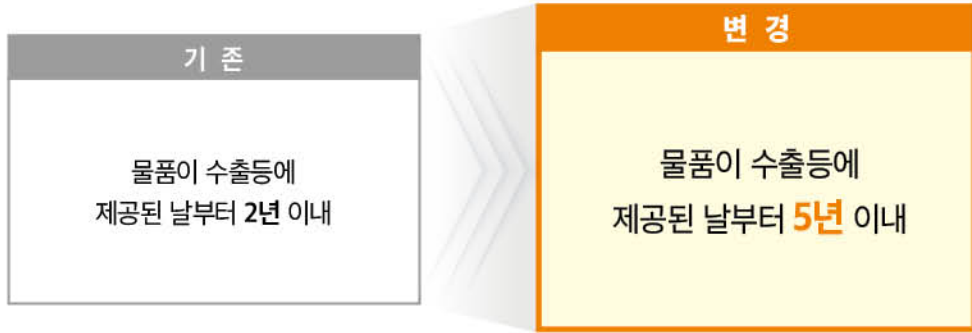
1. 환금신청 기간 연장
2. 환금정정 신설
3. 간이정액환금 기준 실적 확대
4. 수출포장용품 환금대상 확대



IV. 최근 달라진 환급제도



1. 환급신청 기간 연장 | 2023년 1월



2. 환급정정 신설 | 2023년 9월

- 환급금 지급 이후 환급금 등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환급금액에 영향이 없는 환급 중요요소의 경우에도 정정 불가

< 정정 예 >

-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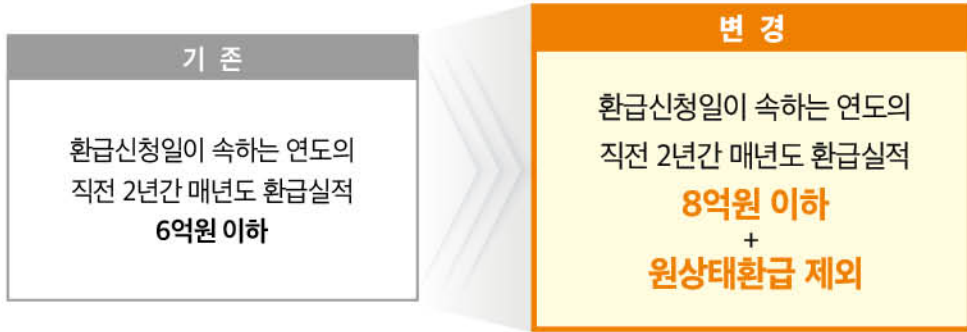


환급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 환급 감액으로 변동 : FTA 사후적용, 세율적용 착오(예:8%→0%) 등은 세관장이 추징
- 환급 증액으로 변동 : 누락된 관세 등은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재환급



3. 간이정액환급 기준 실적 확대 | 2024년 3월



4. 수출포장용품 환급대상 확대 | 2024년 2월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개별환급의 경우에 해당함)



V.Q & A

Q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는?

A 간이정액환급은 ①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체로, ②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임가공계약서) 사본 등 제조업체 확인서류입니다.

Q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중 업체에 유리한 대로 번갈아 적용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시마다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원칙적으로 2년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정액대상 업체라도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는 경우
- 수입물품 그대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업체인 경우
- 무상수탁가공 수출과 무상수탁가공 물품의 대체 수출인 경우

Q 간이정액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출 사실만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신청은 누가할 수 있나요?

- A** 1. 일반적으로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 : 수출자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 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Q 환급의 관할지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 A** 1. 관할지세관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세관입니다.
2. 예도 불구하고 환급 관할지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특법 고시 별지 제2호 '환급신청 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환급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A** 통상적인 추가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최초 수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추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환급특례법 14조(환급신청)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1. 「관세법」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2. 「관세법」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Q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물품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수입한 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율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환급수령 계좌는 기존에 있는 법인통장을 이용해도 되나요? 환급금만을 전용으로 다루는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 A**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요건 충족 시 새로 개설하실 필요 없으며 기존에 있는 통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수출형태

01	관세법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 (법 제4조제1호 본문)
02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 (법 제4조제1호 본문)
03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포함),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의 제조·가공 후 공급물품 (법 제4조제3호)
04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포함),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의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 (법 제4조제3호)
05	국제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 (규칙 제2조제4항제1호)
06	국제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 (규칙 제2조제4항제1호)
07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 (규칙 제2조제4항제2호)
08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 (규칙 제2조제4항제2호)
09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10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
11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12	주한미군에 판매물품 (규칙 제2조제2항제1호)
13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 (규칙 제2조제2항제2호)
14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15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16	차관자금을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 (규칙 제2조제2항제5호)
17	(삭제)
18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19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20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21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 (규칙 제2조제1항제6호)
2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23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24	전자상거래 수출 (법 제4조제1호)
25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법 제4조제1호 본문)
2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27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포함),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 (법 제4조제3호)
28	국제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 (규칙 제2조제4항제1호)
29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 (규칙 제2조제4항제2호)
30	현물차관 수출 등 기타 유상수출 (법 제4조제1호 본문)
31	관세 등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 (환급액>징수액)
32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
33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규칙 제2조제1항2호)
34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35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 수출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36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37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VI. 서식모음

[서식1.] 합급신청서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정B)

합급신청서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정B)

접수번호 : XXX-XX-XXXXXXX

㉔ 연번	㉕ 부산물식별번호	㉖ 원재료식별번호	㉗ (원재료구분) 신고번호-한-규격		㉘ 관 세	㉙ 개별소비세	㉚ 교 통 세	㉛ 서역합계
			㉘ 수입(대입)일자	㉙ 품목번호	㉚ 주 세	㉛ 교 육 세	㉜ 늘 득 세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서식2.] 환급신청기관 []신규 []변경 신청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환급신청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장수	
	주소			
사업장 내역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관할지세관	비고
변경신청 내역				
변경 전 세관		변경 후 세관		
※ 최초 환급신청시 '00' 기재				
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				

변경신청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신청기관을 신청 또는 변경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담당	주무	과장

VI. 서식모음

[서식3.] 환급신청서 정정 신청(승인)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4서식]

환급신청서 정정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5일

①지출번호		②환급지세관 XXX	
1. 신청인	③상호	④대표자	
	⑤연락처	⑥구분 1. 환급신청인 2. 관세사	
2. 환급신청인	⑦상호	⑧성명	
	⑨사업자번호	⑩통관고유부호	⑪연락처
3. 환급신청서 내역			
⑫접수번호		⑬결정일자	YYYY-MM-DD
4. 정정 내용			
⑭신고서 구분	⑮연번	⑯정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수입원재료(병)	⑮연번-00002	⑯(00)신고번호-관-규격	111112211111M-002-01
			111112211111M-002-02

⑰정정 사유 (간략히 기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을 신청합니다.

YYYY년 MM월 DD일(신청일)

신청인 XXXXXXXXXXXX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정정을 승인합니다.

YYYY년 MM월 DD일(과장결재일)

XXXXXXXXXX 세관장

[서식4.] 환급금 계좌 []신규 []변경 통보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신규 []변경 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또는 비적용 승계 여부(제32조제7항)

기존상태 승계 여부	기존 통관고유부호	기존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최종 승인일자
[]승계 []비승계		[]적용 []비적용	

[] 신규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
실명확인번호1 (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 (주민등록번호)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실명확인번호1(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 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1부.	담당	주무	과장
----------	--	----	----	----

- ※ 승계여부 선택란은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는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기재할 것
- ※ 환급금 계좌는 법인 또는 대표자명으로 개설해야 하며, 실명확인번호는 환급금 계좌개설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환급신청업체의 환급업무 담당자 및 해당 연락처를 기재할 것.

[서식6.]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서 []변경신고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서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명	

품목번호(HSK)	수출물품	소요량 산정방법	산정방법 변경		산정 대상기간	적용기간
			증선	변경		

자율소요량 관리서류 신고

-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 2. 원재료 수불대장
- 3. 제품 수불대장
- 4. 부산물 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5. 소요량계산서철
-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7. 위탁가공계약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수수료 없음
------	--------------------	-----------

환급 스타트업체를 위한

환급신청

길리잡이

발행일 2024년 5월

총괄 대구본부세관장 김정

집필 대구본부세관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본부세관 납세지원과 김영희, 우정화, 손경하, 조남희, 예민경, 김은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5층
Tel 053. 230. 5311~2 Fax 053. 230. 5636

감수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최현정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익표, 홍경아, 정니나

디자인·인쇄 모모디자인(주) Tel 053. 639. 5008